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사례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재우

1. 머릿말

건설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인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찰계약제도 등 주요 건설관련제도의 개편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도입이 확정되고' 93년 7월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재무부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992. 9). 그러나 그동안 제도도입의 필요성만 강조되었던 나머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PQ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요소 설정 및 요소별 배점(가중치 적용)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PQ의 평가기관 및 제출자료(공사실적, 기술자, 장비 등)에 대한 인정방법에 이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발주기관의 PQ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PQ제도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자격심사(PO)제도

Pre-Qualification, 즉 사전자격심사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건설업자가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를 이른다. 사전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우선 발주자측 면에서는 1) 발주자를 무자격업체로 부터 보호하고 2) 최종 평가가 유자격업체에게만 한정됨으로써 입찰평가가 신속간결해지며, 입찰업체 측면에서는 1) 자격미달업체는 PQ단계에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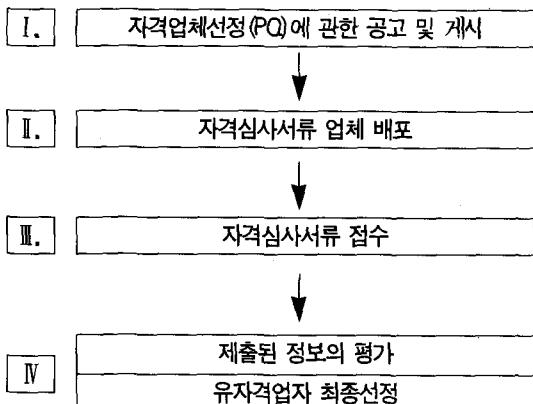
전탈락시킴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입찰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잇점이 발생한다.

사전자격심사제도는 크게 나눠 프로젝트별 PQ와, 리스트 작성(등급판정)을 위한 PQ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매 공사마다 직접적인 사전자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나라, 일본, 영국에서 시행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업체를 심사하여 업체별로 등급을 판정하는 간접적인 자격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체들을 건설 성의 객관적 사항과 발주처의 주관적 사항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이를 합산, 업체별로 해당등급(격부)를 부여한 다음 등급범위에서 지명을 받게 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하게 업체별로 심사하여 LIST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명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심사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도급한도액에 의한 간접적인 자격심사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0억이상의 일부 대형공사에 공사별 자격심사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 할 예정이다. 제도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첫째, 공사가 다양화되고 소요기술도 복잡·고도화추세에 있어 현행 도급한도액으로서 실질적인 시공능력의 평가가 어려우며, 둘째 정부조달 협상에 따른 국제입찰에 대비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발주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기술과 시공능력위주의 입찰제도야말로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사별 PQ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전자격심사제도의 형태를 구상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자격심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행되게 된다.

〈PQ의 절차〉



PQ 초기단계에서 발주처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a) 입찰초청의 일반내용, b) 간략한 공사개요 및 입찰조건의 설명, c) PQ심사 질문서(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들수 있는데 PQ심사 질문서는 PQ의 평가요소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2.1 평가요소(Evaluation Factors)와 배점(Distribution of Points)

사전자격심사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크게 (1) 재정능력(financial capability), (2) 기술적 자격(technical qualifications) : 경영, 기술자, 필요장비의 제공능력, (3) 시공경험(experience)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특별히 어떤 요소(factor)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로 분류하여 세 가지 이상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의 최고점(가령 100점)이 결정되면 업체의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도에 따라 각 요소별로 점수가 배분된다. 가령 공사의 복합도나

난이도때문에 시공경험이 특별히 중요한 공사일 경우 「시공경험」요소에 배분되는 점수를 더 높게 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한 요소 안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가요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이 설정되어야 한다. 「기준」이라 함은 자격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측도(scale)로서 PQ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보가 점수로 변환되는 방식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기준은 계량적으로(즉 유사공사의 실적의 크기등과 같은 수나 값등) 표시된다. 그러나 비계량적인 기준이 사용될 때도 있는데 가령 경영성과나 기술자의 평가시 그 기준이 판단의 성격을 띠어 「적정」, 「부적정」, 「만족 혹은 약간 만족」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2.2 점수체계의 예시(Example)

우리나라의 평가기준을 구상하기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로 사용하는 점수체계의 예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점수표 참조). 여기서 제시한 평가요소와 배점은 (1) 공사의 예정가격 \$5천만 (2) 공사내용은 토공사, 도로건설, 콘크리트구조의 축조, 영구장비의 설치와 전문기술 일부 포함 (3) 공시지역은 적도기후지역의 지형이 협한 외딴섬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었다.

가정에서 주어진 현장특성을 고려할 때 시공경험을 어떤 요소보다도 더욱 비중있게 취급하여야 하며 재정능력과 기술적 자격에는 대등한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점 100점은 재정능력 30점, 기술적 자격 30점, 경험 40점으로 배점된다.

유자격업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마다 필수점수를 상회하여야 하는데 이 점수는 요소별 최대점수의 50%로 결정된다. 요소마다 필수 점수를 어렵게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자격이 미흡한 업체가 자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PQ를 통과시키는 기준점수는 요소별 필수점수의 합계보다는 높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PQ기준점수는 만점의 60%인 60점에 서 결정되었다.

◦ 재정능력(Financial Capability)

일반적으로 업체의 자금상태를 평가하는데 필 요한 기초적 정보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제공된다. 이 두 자료는 기업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합작회사처럼 재무제표를 따로 공표하지 않는 기업은 따로 준비한 보고서를 외부의 공인감사기관의 공인을 거쳐 제시하게 된다. 가능하면 자금순환표도 필요한데 이는 기업의 유동성과 채무부담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점수체계에는 보통 반영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된다. 통상 3년동안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자료의 연간변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수체계에는 전년도 성과만 반영된다.

a) 매출액(Income, Sales)

매출액은(가끔 수익으로 표기) 건설공사이외에도 다른 사업부문으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수체계에는 건설공사로부터 파생된 매출만 사용된다. 따라서 매출관계자료를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매출액은 2차적인 평가요소로서 단지 업체의 영업규모에 대한 측도일 뿐 그것 자체로 수익성(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영업규모도 총자산처럼 회사의 경영, 인력 및 자재의 동원능력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원이 많을수록 동원능력이 향상되어 필요한 경우는 타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게 된다.(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 PQ에서는 매출은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입찰능력(Bid Capacity)

입찰능력은 기본총계의 5배와 순운전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의 10배중 작은 항목에서 계약액중 미기성분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입찰능력이 공사금액을 초과하면 최고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입찰능력의 최고점수만으로도 요소의 필수점수를 넘게하거나 아니면 입찰능력이 다소 낮더라도 「매출액」이나 「신용 한도」에서 점수를 추가하면 필수점수를 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재정능력 부문에서 PQ통과에

필요한 필수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세 분요소에서 적어도 중간치 점수이상을 얻어야 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c) 신용한도(Available Credit)

업체의 신용한도는 낙찰시 은행이 대출을 약속한 액수로서 자기자원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정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신용한도」가 「입찰능력」과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부채를 사용하면 미래의 총자본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을 빌리는 경우 대차대조표에 부채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지불로 인한 비용증가로 반영될 것이다. 비록 빌린 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관점에서 는 업체의 자기자산과 동일하지만 업자의 미래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동일하지는 않다.

◦ 기술적 자격(Technical Qualification)

기술적 자격은 시공경험을 제외하고 업체의 기술적 자격을 평가하는 요소는 모두 포함하게 된다. 시공경험은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므로 따로 별도의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 이렇게 하여 야만 공사경험이 전무한 경우에도 기술적 자격 부문의 높은 점수로 PQ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현장관리(Site Management)

현장관리는 업체의 공사수행에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본사 경영진의 자질이 공사수행에 영향은 미치기는 하지만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현장의 관리나 경영이 더욱 중요해 지기 때문이다. 본사와 현장관리와의 연계조직(즉 현장관리자에게 권한의 위임)의 적절성 여부는 공사의 관리조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포함된다. 현장 관리는 세가지 측면에서 각각 평가된다.

(1) 조직구조(Oranizational Structure)는 시공, 물자조달, 계약관리에 대한 책임이 개별분야로 조직체계에 정의되어 있고 관리자들간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적절」평가를 받게 된다.

(2) 관리자의 능력(Competence of Management)은 경력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의 교

육, 경험과 과거 업무성과를 토대로 평가된다.

- (3) 본사에서 현장관리까지의 권한의 위임 (Delegation of Authority)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평가한다. 시공, 고용관리, 조달 및 계약관리 업무, 구체적으로 현지물자 구매, 설계변경의 처리, 납부, 인력배치등과 같은 업무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b) 주요관리자(Key Personnel)

고급기술자들은 감독, 고급기술자, 회계사, 구매담당자 및 주택담당자등의 관리인력들을 지칭한다. PQ의 질문양식에는 해당인력의 담당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세가지 기준 즉 1) 시공부문과 지원업무에 적정수의 관리자 확보여부 2) 전문시공분야의 전문기술자의 확보여부 3) 배치인력의 능력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c) 하도급(Subcontracting)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회수가 적을수록 공사관리가 수월해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도급업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를 다룰 정도로 경험, 인력, 장비등을 보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공사에서 전문공종의 하도급시공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원도급업자는 공사의 주요부분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도급의 회수와 공사분담계획은 따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이다.

c) 설비 및 장비(Plant and Equipment)

건설업체가 필요한 장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등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공사의 계약기간 동안만 임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장기임대의 경우 공사예정기간보다 임대기간이 긴 경우는 자기소유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만 임대사용할 장비의 경우는 자기소유장비나 장기임대 장비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비가 지금까지 업자의 관리밖에 있었으므로 장비의 사용년한이나 상태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기에 원하는 종류와 품질을 가진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가지 요소, 즉 장비의 출처(source)와 사용년한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소유의 장비라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이미 투입된 장비는 공사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비의 총량에서 차감해야 한다.

◦ 시공경험(Experience)

시공경험을 평가하는데는 세가지 요소가 이용된다.

첫째는 그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시공경험, 둘째는 유사한 현장조건에서의 시공경험, 셋째는 업체가 과거 시공한 공사의 발주자 추천을 들 수 있다.

둘째 요소는 가끔 「유사한 기후조건에서의 유사한 공사」로 정의되기도 하며 기후조건이 외에도 특별히 부각되는 요소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다. 공사의 위치와 관계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기후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이 이외에도 공사현장이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정도로나 공사현장의 지형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경험의 평가는 일정기간 동안 통상 10년 동안의 총 계약액(완성 혹은 진행중인 공사도 포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공사가 합작(Joint Venture)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공사액을 합작지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계산한다. 공사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해당기간 동안의 모든 공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번 공사와 얼마나 유사한지 즉 공사의 종류와 현장 상태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과거 시공한 공사의 발주자로 부터의 추천(reference)이 보통 요구된다. 이 요소에 대한 배점은 시공경험점수가 낮은 경우 일부 보완하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경험점수가 아주 낮은 경우 추천에 의해 필수점수를 통과할 만큼 과다한 배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점수표의 예 (example)〉

최고점수 100점 ; PQ통과점수 60점

평가요소	구 분	점수	최고 점수	소계
재정상태 (Financial Condition)	(a) 총매출액 (income from contracting)	6		
	- \$ 5백만이하	0		
	- \$ 5백만~\$ 15백만	1		
	- \$ 15백만~\$ 40백만	2		
	- \$ 40백만~\$ 75백만	4		
	- \$ 75백만이상	6		
	(b) 재정적 입찰능력	18		
	- \$ 5백만이하	0		
	- \$ 5백만~\$ 15백만	5		
(c) 신용한도	- \$ 15백만~\$ 25백만	9		30점
	- \$ 25백만~\$ 40백만	11		
	- \$ 40백만~\$ 50백만	15		
	- \$ 50백만이상	18		
기술적 자격 (Technical Qualification)	(a) 현장관리	6		
	(1) 조직			
	-부적절	0		
	-적절	1		
	-매우적절	2		
	(2) 능력			
	-부적절	0		
	-적절	1		
	-매우적절	2		
	(3) 권한의 위임			
	-부적절	0		
	-적절	1		
	-매우적절	2		

평가요소	구 분	점수	최고 점수	소계
	(b) 주요현장인력			
	(1) 할당인원			
	-미흡	0		
	-충분	2		
	(2) 전문기술자동원			
	-부적절	0		
	-적절	2		
	(3) 능력			
	-아주 낮음	0		
	-낮음	2		
	-보통	4		
	-높음	6		
	(c) 하도급패턴			
	(1) 하도급의 횟수			
	-4회이상	0		
	-0~4회	1		
	(2) 분업			
	-주요공정하도급	0		
	-하도급전무	3		
	혹은			
	전문부문만			
	하도급			
	(d) 설비 및 장비			
	(타공사 투입분 제외)			
	(1) 주요 설비와 장비의 동원능력			
	-미흡	1		
	-보완하면 충분	2		
	-충분	4		
	(2) 출처			
	-자기소유 없음	0		
	-50% 자기소유	1		
	-50%~70%	2		
	자기소유			
	-75%이상	3		
	자기소유			
	(3) 주요설비와 장비의 낙령			

평가요소	구 분	점수	최고 점수	소계
	-10년이상 -5~10년 -5년이하 (4) 차량의 평균수명 -3년이상 -3년미만	0 1 2 0 1		
시공경험 (Experience)	(a) 유사한 공사경험 -없음 -\$ 10백만미만 -\$ 10백만~\$ 25백만 -\$ 25백만~\$ 35백만 -\$ 35백만~\$ 50백만 -\$ 50백만이상	0 3 6 11 14 18	18	
	(b) 유사한 현장조건의 경험 -없음 -\$ 10백만미만 -\$ 10백만~\$ 25백만 -\$ 25백만~\$ 35백만 -\$ 35백만~\$ 50백만 -\$ 50백만이상	0 2 5 8 12 14	14	40점
	(c) 추천 -없음 혹은 부적당 -적당한것 1개 -적당한것 2개 -적당한것 3개이상	0 2 5 8	8	

〈국내기업의 자본능력〉

(단위 : 백만원)

회 사	'92 도급한도액	A(자본총계×5)	B(순운전자본×10)	A, B중 작은 항
현 대 건 설	970,123	2,222,670	805,820	805,820
동 아 건 설	619,331	1,487,540	4,490,770	1,487,540
삼 성 종 합 건 설	575,574	594,715	848,150	594,715
대 림 산 업	488,337	2,034,365	3,261,290	2,034,365
럭 키 개 발	425,674	716,905	1,594,230	716,905
우 성 건 설	299,146	689,225	1,568,770	689,225
동 부 건 설	283,509	323,395	533,510	323,395

주 : 재정적 입찰능력은 A, B중 작은 항에서 PO당시에 미기성계약액을 차감한 금액

3. 한국적 평가방식의 모색

ADB의 PQ평가체계가 도급한도액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도급한도액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왜곡된 평가방식인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다.

도급한도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개발평가액 3요소의 합계로 산정되고 있다. 여기서 경영평가액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상대평가한 점수에(평균점수는 1) 공사실적평가액의 1/2을 곱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무상태가 가미된 공사실적」이나 다를 바 없다. 기술개발평가액은 조세 감면규제법에 규정한 기술개발투자액에 10배를 곱한 금액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비율 평점이 1점, 기술개발평가액이 공사실적의 9%('90년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율 0.9%×10배)라고 가정할 때 도급한도액 전체의 약 94%가 사실상 총공사실적(매출액)에 의존하여 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ADB의 PQ 심사요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재정상태(financial condition) 요소의 한 항목에 불과한 매출액(총실적)에 전체점수의 94%가 편중된 매우 기형적인 시공능력 평가방식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급한도액은 매출액이외의 다른 요소 즉 기술적인 자격이나 시공경험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당히 부정확한 시공능력 평가방식임을 의미하여 향후 PQ심사요소의 합리적인 선정과 배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점수표의 평가요소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채택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정상태 부문에서 재정적 입찰능력(bid capacity) 항목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도급능력의 지표로서 활용된다. 업체당 미기성계약액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재정적 입찰능력은 도급한도액보다 훨씬 낮게 계산될 것이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총계약액대비 자본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건설업체의 자본충실험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신용한도(available credit) 항목은 공사를 수주할 경우 거래은행이 제공하기로 한 신용한도를 나타내며 타인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 항목은 공사의 자금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점수비중은 낮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 자격항목에서는 현장관리, 주요현장인력, 설비 및 장비부분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하도급패턴도 중요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항목이므로 향후 우리의 PQ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공사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점수는 낮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계약화 촉진을 위해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공경험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취급되어 배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PQ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유사공사의 시공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종의 수주경험이 없는 회사가 아직 많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입초기에는 “유사성”的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과거 시공주(발주자)로 부터의 추천의 여부도 하나의 평가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요소이외에도 부실시공, 하자 발생, 산업재해율 등 다른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시공자격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소는 모두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더라도 PQ를 위해 업체가 제출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전부 혹은 일부를 특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certificate)를 받도록 하며 미국의 경우 기재내용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증(public notary)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실적 및 장비의 확인은 협회를 통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은 기술인 협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공인절차가 아니더라도 허위기재시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PQ자료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실적이나 경력등에 해외공사를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협소한 국내시장여건과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해외공사는 전부 인정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PQ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심사인력의 전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공사마다 그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최종낙찰자 선정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심사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PQ제 시행은 심사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만 야기시키며 PQ제는 다시 폐지될 운명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심사인력의 전문화와 심사체계의 구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